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3조(행정처분·조치 등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처분 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위치	위반사항	처분일
YJ(와이제이) 수학회원	고영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25 2층 201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2019.12.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사항 조회 결과 “해당사항 있음”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의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3. 행정처분 내용 : 등록말소

4. 법적 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5. 공고 기간: 2019. 12. 9.(월) ~ 2019. 12. 24.(화) 15일간

6. 알리는 사항

가. 귀하께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860-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